※「사무전결 처리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부구청장 전결

방침번호	
문서번호	
결재일자	
공개여부	

★주무관	감사청렴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협 조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정책담당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송파구 SONGPA-GU

감 사 담 당 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지적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감사 규칙」 제4조**(감사의 종류)

○ **2022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구청장 방침 제2호, 2022. 1. 6.)

○ **2022.일자리정책담당관 종합감사 실시계획**
(부구청장 방침 제49호, 2022. 1.17.)

Ⅱ 감사개요

○ **기 간**: 2022. 2.14.(월) ~ 2.25.(금) (10일간)

- 예비감사: 2020. 2. 7.(월) ~ 2.11.(금) (5일간)

○ **대상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 **종 류**: 종합감사

○ **범 위**: 2018. 1. 1. ~ 2021.12.31.까지 업무 전반

※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외부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수감 분야 제외

○ **인 원**: 감사청렴팀장 외 4명

○ **감사방법**: 서면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 감사사항**

- 부서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 민간위탁, 기금, 보조금 관리·운영 및 집행 실태
-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직업소개소 등록 등 추진업무

Ⅲ 일반현황

○ 직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운영	기타 (임기제)	비고
정 원	20	1	5	4	5	5	-	-	
현 원	22	1	9	3	8	1	-	-	

※ 기 타: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세출예산	6,021	5,132	9,458	8,717	19,113	17,112	22,069	15,548
구 전체 예산대비 (%)	826,457 (0.7)	704,723 (0.7)	948,911 (1.0)	828,085 (1.1)	1,328,270 (1.4)	1,165,974 (1.5)	1,257,962 (1.8)	1,113,816 (1.4)

○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등 현황

(2021.12.현재, 단위: 명, 천원)

구분	사업명(시설명)	근무자 수	2021년	
			예산액	집행액
기간제	참살이실습터 운영	1	28,325	28,137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3	124,429	120,178
	청년정책 매니저	2	44,609	42,549
	서울을 이끄는 50+ 희망일자리 컨설턴트	6	175,000	166,580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2	71,538	70,854
	희망근로지원사업	140	1,752,093	1,690,01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舊공공근로사업)	28	3,374,570	2,738,538
	희망일자리사업	331	1,088,668	956,081
계약직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3	158,500	129,481

○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1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972,000		972,000	
2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사무관리비	1,875		1,875	
3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0	0	0	54,000
4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05,025			105,025
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ICT정보보호일자리협의체발족및고용연계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0	65,000	0	0
6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디지털융합마케터신입사원양성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108,000	0	12,000
7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방문간호서비스전문인력양성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36,000	0	4,000
8	실무 프로젝트 기반 딥러닝 개발자 양성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60,000
9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4,840	0	102,420	102,420
1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말벗활동단)	민간경상사업보조	149,527	129,624		19,903
11	해외 및 국내규격인증 획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0	0	20,000
12	송파구상공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0	30,000
13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0	0	40,000
14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0	0	50,000
15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37,000	252,750	84,250	
16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5,775	86,831	28,944	
17	지역자산 활용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	26,100	7,830	18,270	
18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60,000	
19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0			140,000
2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15,000	80,500	34,500	
21	디지털 뉴딜 지원사업 멘토링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22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00	55,000	27,500	27,500
23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0		30,000	
24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젝트	민간위탁금	4,000		4,000	
25	지역특화사업	민간위탁금	1,500	1,050	450	

○ 민간위탁 사업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천원)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예산 (민간위탁금)	위탁기간	선정방식	비고
송파ict청년창업 지원센터	(재)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242,100 (구비)	2020.9.1.~2023.8.31.	공개모집	시설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및 관리	송파구상공회	-	21.06.20.~24.06.19 (3년)	수의계약	예산지원형 시설위탁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	359,000	2020.1.1.~2022.12.31.	공개모집	시설

○ 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규모 (연간 운영비)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3년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경영안정 지원	8,071,796
2019년				7,205,600
2020년				6,579,787
2021년				8,134,662

○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부 과		징 수		징수율 (%)	시정명령 등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산업집적법 위반	2018	2	3,200	2	3,200	100	3건	취소1건
	2019	1	1,600	1	1,600	100	7건	
	2020	-	-	-	-	-	0건	
	2021	-	-	-	-	-	1건	
노동조합법 위반	2018	-	-	-	-	-	0건	
	2019	-	-	-	-	-	1건	
	2020	-	-	-	-	-	2건	
	2021	-	-	-	-	-	0건	

Ⅳ 감사결과

1. 종합평가

【총 평】

○ 2022. 2.14.~2.25. 기간 동안(10일간) 일자리정책 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일자리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송파ICT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카페, 참살이 실습터 등 일자리 관련 주요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송파구 **일자리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2021. 대한민국 일자리어워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루었음. 또한, **전국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음.

○ 이처럼 대외수상 등으로 송파구의 위상을 높인 점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적극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그럼에도 일부 직원들의 관련법규 및 지침 미준수,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총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였고,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착오 지급, 공사장 폐기물 처리비 부적정 지급 등을 적출하여 **금△천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수범사례 △건**을 도출하였음.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예산 · 회계 분야**

-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소홀**로 인한 **수당 과오 지급**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주의를 요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공가**를 **사용**하여 **연가보상비를 과다 수령**한 사례, **조퇴** 시 초과근무가 인정되어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 등에서는 보다 철저한 복무관리가 요구되었음.
- 또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으로 연체료** 발생, **회계연도 경과 후 전년도 카드 이용대금**을 **집행**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정시기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심야시간 사용**,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일상경비 지급원칙 미준수** 등의 미흡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음.

○ **일자리사업 분야**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운영, 직업소개사업소 업무, 일자리센터 운영 업무 등 일자리사업 분야에 전반에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미흡한 분야가 발견되었음.
-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신고', '사업장 신고 지연' 등 **공공근로자 고용 및 해고 관계와 관련된 신고**를 **일부 지연**하여 실시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보험관계 신고 업무는 근로자의 보험 자격 유지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와 공공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되었음.
- 또한, 직업소개사업소 업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 미가입 등 **일부 위반사항이 있는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항이 지적되었음. 매년 지도점검 시,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주의 깊게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하는 등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이 요구됨.

○ **사회적경제 분야**

- 사회적경제 분야 전반에 대하여 절차와 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리 소홀 등 일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음.
- **위 · 수탁 협약** 상 기한을 지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속적으로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사례, **보조금 운영 관리 시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우리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의 사무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 감독이 요구됨.

○ **청년일자리 분야**

- 송파ICT청년창업취업센터를 조성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수입금(관리비) 정산 소홀**, **사업비 집행 부적정**과 같은 일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음.

○ **공사 용역 분야**

-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허브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참살이실습터 등 관련시설 개선공사와 청장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대부분 소액 수의계약 범위에서 진행하면서,
- 사업완료 시 **정산을 위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준공 검사자 지정**과 **검사기한**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사업완료 후 **하자**(손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기간 설정**과 **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는 단계에서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었으며,
- 특히 수의계약은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유사한 사업의 경우 통합 발주해야 함에도, **시기와 금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엄중한 주의가 요구되었음.

【수범사례】

○ 주요 **수범사례**

- **청년특화 일자리플랫폼**(문정비즈밸리일자리허브센터,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으로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어워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전국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
- **송파구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허약노인 돌봄과 신중년 사회공헌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50+ 말벗활동단**을 **운영**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마련

2. 분야별 세부 지적사항 - 총 △건

예산·회계 분야

1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의 근거 및 연가가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고,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text{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12\text{개월} - \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개월}}$$

○ 같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연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text{연가시간} = \text{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0)}} \times 8\text{시간}$$

○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 1.22. 임용된 ○○○급 △△△ 주무관의 2019년 연가보상비 산정 시 △△△ 주무관은 2018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19년도에 연가 가산을 할 수 없음에도 1일을 가산하여 연가보상비 <u>△원 과다 지급</u>

○ 2019. 2. 1. 임용된 ○○○급 △△△ 주무관의 2020년 연가보상비 산정 시 △△△ 주무관은 2019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0년도에 연가 가산을 할 수 없음에도 1일을 가산하여 연가보상비 **△원 과다 지급**

○ 2021. 2.21.~4.21(2개월) 휴직 후 복직한 ○○○급 △△△ 주무관의 2021년 연가보상비를 산정하면서, △△△ 주무관의 연가일수는 연도 중 복직한 자의 연가일수 산정 방식【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15일×〈12-2(당해연도 휴직기간)/12〉】및 시간선택제 계산식에 따라【13일×〈35/40〉×8】총 연가시간은 91시간임에도 105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 △원 과다 지급**

□ **조치사항 : 시정**(환수)

○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2 초과근무수당(정액분 등) 과다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에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정액분(10시간)을 추가 지급하되,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지침에 의하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고 하면서도 단,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에 의하면 조퇴 및 오후 반일연가는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한 경우로 그날의 근무는 종료된 사항으로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하고, 따라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도 불가하다고 하였음.

□ **지적사항**

○ 2018. 9월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에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해 15일 중 부족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정액분(10시간) 전액 지급하는 등 **총 △건 △원 과다 지급**

○ ○○○급 △△△ 주무관은 2020.03.13. 16:00 조퇴하였음에도 3.13. 09:00~23:00까지 240분(4시간)의 초과 근무가 인정되어 2020. 3월 총 △시간 **△원의 초과근무 수당 과다 수령**

□ **조치사항 : 시정**(환수)

○ 과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3 출장여비 지급 소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20.12월 출장여비 지급 시 ○○○급 △△△의 출장 횟수는 총 △회로 월액 출장 여비 △원(△회*1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원을 지급하여 **△원 과다 지급**

□ **조치사항: 시정**(환수)

○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를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4 공가 사용 부적정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공가)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5.「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또한, 2019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 안내(총무과-2019.08.23.)에 따르면 '2019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사무직(2년1회, 2019년 대상자: 홀수년도 출생자), 비사무직(1년 1회)으로 되어 있음.

※ 일반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 실시 사유로 공가 가능 (암검진자는 해당 안됨.)

□ **지적사항**

○ ○○○급 △△△ 주무관은 2019년도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짝수년도 출생자) 2019.10. 4.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사용하여 **연가보상비 △원 과다 수령**

□ **조치사항: 시정**(환수)

○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5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 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 7월 카드이용대금 2,354,720원을 결제일(2018. 7.25.)이 도래하기 전 카드이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결제 당일 1,065,186원이 부족한 1,289,534원을 입금함으로써 연체이자 △원이 발생하는 등 **총 △건, △원의 연체이자**를 **예산으로 과다 지출**

○ 2019. 5. 1.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냉난방기 수리비용 145,000원을 지급하면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에 17일 지연하는 등 **총 △건**에 대해 **최소 17일~최대 78일 지연 입금**

□ **조치사항: 시정**(충당)

○ 예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를 충당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6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복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 7.27. 일자리정책과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18. 7.31. 일자리공시제 업무 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지급 시 같은 결제 건을 **중복 지급**

□ 조치사항: 시정(반납)

○ 중복 지급한 카드이용대금을 반납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7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납 폐쇄기한까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납 폐쇄기한 전에 원인행위까지 완료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20.12. 8. 103,600원을 부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계연도를 경과한 2021. 1.28. 지급하는 등 **총 △건 △원**에 대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지급**

□ 조치사항: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8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심야시간 사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민권익위원회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에 의하면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 2. 8. 일자리안정자금 사업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인 **심야(23시 이후) 시간(23시30분)**에 법인카드로 △원 **결제**

□ 조치사항: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및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 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하며,
-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행사지원 인력(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을 집행할 수 있으며,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의 집행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 지적사항

○ 2018. 3. 7.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여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는 등 **총 △건**을 예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10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제1항제19호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 기준으로 이전은 수당의 4.4%(과세 최저한 250,000원), 이후는 수당의 6.6%(과세 최저한 166,666원)를 원천징수해야 함.

※ 2019년부터는 수당의 8.8% 원천징수(과세 최저한 125,000원)

□ 지적사항

○ 2019. 7.15. 찾아가는 특성화고 노동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총 △건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11 일상경비 지급원칙 미준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재정사항의 합의)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계약 물품제조·구매, 50만원 이상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 같은 규정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에 따르면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으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와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시행으로 2021년부터 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로 변경(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 지적사항

○ 2018. 3.2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2,100천원을 지급하면서 회계담당 부서(재무과)의 합의를 받지 않는 등 1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총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지급**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12 일상경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소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제159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제1항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은 구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제2항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매년 분기마다 재무과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적사항

○ 2018. 3.22. 국내외 박람회 및 중소기업 홍보 현수막 구매 비용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도 재무과에 **미제출**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일자리사업 분야

1 일자리사업 참여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소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지적사항

○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발생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건에 대하여 **최소 25일~최대 4개월 15일까지 지연 신고**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2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사업 사업장 신고 지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적사항**

○ 2020.2.24. 발생한 사업장 적용 신고 건에 대하여 2020.3.30. 신고하여 **16일 지연**하였고, 2020.5.19. 발생한 적용 신고 건에 대하여는 2020.6.18. 신고하는 등 신고기한으로부터 **21일 지연신고**

□ **조치사항: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3 직업소개사업소 정기 지도단속 소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적사항**

○ **2019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9년 하반기** 지도단속 시 확인된 총 44건의 위반 행위 단속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조치 미실시**

□ **조치사항: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4 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 소홀

○「직업안정법」제34조의2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 및 [별표2]에 따라 법 제34조의2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지적사항**

○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예치금 예치기간 및 보증보험 만료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실시**

□ **조치사항: 시정**(행정처분)

○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5 직업소개사업소 변경등록 시 대표·임원 겸업여부 조회 소홀

○「직업안정법」제26조에 의하면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지적사항**

○ 2020.1.21. 접수된 △△△△△△△△△△㈜, 2020.10.28. 접수된 ○○○○○○(□□□□□□□□□□)의 대표 변경등록 건을 처리하면서, 대표의 겸업여부를 **조회 · 확인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사회적경제사업 분야

1 □□□□□□□□□□ 수탁자 지도·감독 소홀

○「송파구 ○○○○○○○○○ 위 · 수탁 협약서」제8조제3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다음 연도 연간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에 지정기한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적사항**

○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 운영 수탁기관에서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지연**하여 제출(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후 제출 등)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당해 연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소홀**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2 □□□□□□□□□□ 보조금 운영 관리 및 지급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5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 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 받아야 함.

○ 또한「송파구 ○○○○○○○○○ 위 · 수탁 협약서」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4일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구에 청구하여야 함.

□ **지적사항**

○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 수탁기관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집행일이 개시된 이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조금 신청 기한 미준수** 및 해당 기간 동안 **총 13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미제출**

○ **2018. 3월 보조금** 사용 건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 미제출** 등 보조금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권고)하지 않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소홀**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청년일자리사업 분야

1 송파□□□□□□□□□□□□ 수입금(관리비) 정산 소홀

○「송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 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협약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구”가 지급한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발생이자 및 부수 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정산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구”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구’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수탁기관인 (재)△△△△△△△△△△△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송파○○○○○○○○○센터 입주업체에 일정한 관리비를 징수·처리하고 그에 대한 회계연도별 **정산 및 반납 절차 소홀**

□ 조치사항: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2 송파□□□□□□□□□□□□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송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0조에 따르면 “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기관”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구”의 예산과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하고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수탁기관인 (재)△△△△△△△△△△△는 수탁기관 부담으로 집행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원을 2020.12.21. **운영비로 집행**

□ 조치사항: 시정(환수)

○ 잘못 집행된 운영비를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공사·용역 분야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비 지급 부적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에 의하면 5톤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의하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경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지적사항**

○ 2019년 '◍◍◍◍◍ ◍◍판매장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준공내역에 포함된 **폐기물처리비** △**원**에 대하여 **폐기물 수탁확인서** 등 **확인 없이** 준공 후 **공사대금 지급**

□ **조치사항: 시정**(환수)

○ 과다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를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2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건설업 노임단가 적용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통계법」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21년 '△△△△△△△△△△△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서 저압 **케이블전공 노임단가에 내선전공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등 **예정가격 작성 소홀**

□ **조치사항: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스템 미적용

○ 기술심사담당관-20501(2017.11.30.)호『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 보급 및 시행 안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준공 시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금액조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시행하여야 함.

□ **지적사항**

○ 2018년 '△△△△△△△△△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검증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정산 후 공사대금 지급**

□ **조치사항: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4 준공검사 지연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총 4건에 대하여 사업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검사조서 작성**

□ **조치사항: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5 준공검사자 지정 소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규칙』(舊 송파구 재무회계규칙)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의하면 물품, 공사, 용역의 검사공무원 기준은 별표6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의 경우 주관부서 담당주사 및 7급 이하('21.08.19. 이후 6급 이하) 1명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 리모델링 공사(기계)' 등 총 8건의 준공검사를 하면서 7급 이하 직원 2명이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자 지정 소홀**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6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및 하자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재69조(하자검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명 및 계약 금액 등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설정** 및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미실시**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7 용역 분할발주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등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분할 발주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 △△△△△ △△ 용역' **총 6건의 용역**에 대하여 **동일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 이면서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2차로 나누어 동일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심사 제외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초래**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8 설계용역 손해배상책임 설정 소홀

○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하면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19조의 3에 의하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9년 '△△△△△△ △△△△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비용을 용역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증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9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체결 소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 이상 금액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 △△△ 인쇄' 등 총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여부 등 확인 소홀**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10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조치 미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에 의하면 제8절 8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에 의하면 '주관 국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 연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표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준공기한 연기의뢰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 △△△△△ △△ △△ 용역' 등 총 2건의 계약에 대하여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책임소재 및 지체상금 부과 검토 없이 준공기한**을 **연기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 일정 변경을 통보받고도 연기요청을 하지 않아 **과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11 준공기한 연기요청 서류 누락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에 의하면 '주관 국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 연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표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준공기한 연기의뢰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 '△△△△△△△△△△△△△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에 대하여 건축·기계 분야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설계변경 심의소위원회, 설계변경 일상감사 등)으로 인해 재무관에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가 표기된 별지 제5호 서식(**준공기한 연기의뢰서**) **누락**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12 사업완료에 따른 보안확약서 징구 소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르면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제3절(용역사업 완료)에 따라 용역사업 완료시 업체로부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과업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 구축' 등 총 2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완료에 따른 **보완확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준공처리**

□ **조치사항 :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현지조치 사항 - 3건

연번	현지조치 사항	조치할 사항
1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소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0호(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등을 비치하고 정리(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의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2021. 4. 5. 프린터(1대*△원)를 구매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음.	**현지시정**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

<table>
<tr>
<td>2</td>
<td>□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검토 누락
○ 송파구에 있는 사업장인 □□□□에 지급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대상자 근로자 △△△에 대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실 통보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20367호(2021.10.14.)]을 접수하였음에도,
-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지원금 수령의 경위 파악, 부정수급 해당 여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보고를 누락하였음.</td>
<td>현지지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td>
</tr>
<tr>
<td>3</td>
<td>□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5.11.05.부터 우리구는 수평적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부당하게 제한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계약 발주시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2018년 용역 발주시 부당계약 특수조건이 없음을 확인하는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상 “과업지시서 등 부속서류에 갑을(甲乙) 용어 대신 송파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다”고 하였으나,
- 2건의 용역 과업지시서 상 ‘계약상대자’를 일부 ‘갑(甲)’으로 표기하였음.
<table>
<tr><th>연번</th><th>연도</th><th>사업명</th><th>계약업체</th><th>내 용</th><th>비고</th></tr>
<tr><td>1</td><td>2018</td><td>△△△△△△
홈페이지 구축 용역</td><td>(주)○○○
○○○</td><td>용어(갑) 사용
점검 소홀</td><td></td></tr>
<tr><td>2</td><td>2018</td><td>△△△△△△△△△
홈페이지 구축 용역</td><td>(주)○○○
○○</td><td>용어(갑) 사용
점검 소홀</td><td></td></tr>
</table>
</td>
<td>현지지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td>
</tr>
</table>

V 수범사례 - 총 5건

연 번	건 명
1	대한민국 일자리어워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	청년특화 일자리플랫폼 조성(문정비즈밸리일자리허브센터,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3	전국 최초!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4	송파구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5	50+ 말벗활동단 운영

제목: 2021. 대한민국 일자리어워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추진목적

○ COVID-19로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현장으로 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을 통하여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음.

○ **2021. 일자리엑스포 참가**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청년 취·창업 플랫폼인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홍보하여 **구정 역점사업인 "일자리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추진내용

○ **2021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 **기　　간**: 2021. 10. 14.(목) ~ 16.(토), 3일간
- **장　　소**: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제2전시장
- **후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 **주　　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일보사
- **내　　용**: 전시부스 운영 및 구정역점사업 홍보

1차 평가		2차 평가		최종심사
·공적심사 · 서류평가	➡	· 현장심사 - 2021.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 양재aT센터, 3일간 전시부스 운영	➡	· 1,2차 종합심사,표창수여
'21.9.24.(금)		'21.10.14.(목)~16.(토)		'21.11.22.(월)

□ 추진성과

○ **202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부문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수상**하여, 대외적인 구 위상제고에 적극 기여하였음

○ 엑스포 개최 기간 동안, 총 방문객 974명을 기록하며, 구정 역점사업 홍보(일자리사업, 송파둘레길, 송파쌤)에도 기여하는 쾌거를 거둠.

제목: 청년특화 일자리플랫폼(문정비즈밸리일자리허브센터,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조성

□ 추진목적

○ 신성장 동력산업 기업 3,000여개가 입주해있는 **문정비즈밸리**와 **구직자간의 일자리매칭**을 적극 지원하는 **일자리허브센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ICT 등 **4차산업에 특화된 청년창업 스타트업 보육공간 조성**을 통해 입주공간(사무실) 제공에서부터 맞춤형 스타트업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송파구 청년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고자 함

□ 추진내용

○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조성**

- 위　　치: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지하1층 190호(330㎡)
- 주요시설: 미팅룸, 지원사무실, 세미나룸 등
- 사업내용: 구인기업발굴 및 일자리매칭, 취업상담 및 전문 알선
- 추진경과

(2017. 11.) 서울시-자치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2018. 4.) 서울시 문정비즈밸리 기부채납지 일부공간 사용 협조
(2018. 11. ~2019. 1.) 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시행
(2019. 1. 30.)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개관

○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 위　　치: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11층, 14층(529.46㎡)
- 주요시설: 미팅룸, 지원사무실, 세미나룸 등
- 사업내용: 구인기업발굴 및 일자리매칭, 취업상담 및 전문 알선
- 추진경과

(2017. 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일자리창출 공동협력 MOU 체결
(2018. 10.~11.) 리모델링 공사 진행
(2018. 11. ~2019. 1.) 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시행
(2018. 12. 1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

□ 추진성과

○ 일자리허브센터 맞춤형 구인구직알선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 분	구직등록	구인등록	알선건수	취업자수 (명)	방문자수	총상담건수
2019년	356	511	1,649	139	5,759	10,662
2020년	414	644	2,222	185	4,957	13,322
2021년	440	605	2,155	184	3,997	12,111
누 계	1,210	1,760	6,026	508명	14,713	36,095

○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매출증대 및 투자유치

- 총 62개 입주기업 유치

(2019.1.~2021.12.31.) 졸업기업 수 **49개사**

(2022.2.현재) 입주기업사 **13개사**

- 입주기업 매출액 발생에 기여: 총 63억원 기록

('19년) 2,539백만원 ('20년) 3,392백만원 ('21년) 514백만원

- 수상 140건, 외부 투자유치 66억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149회 진행, 네트워킹 25회 진행

○ '20.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에 기여

- 민선7기 4개년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 취·창업 기회 보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추진전략으로 수립

-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 허브역할을 전담하는 플랫폼 조성으로 일자리 지역 인프라 확대 및 구민 접근성 향상

-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 성장지원 신규시책 추진, 민관 협력네트워크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고에 기여함.

제목: 전국 최초!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사업 시행

□ 추진목적 ※구청장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 **사회 첫발 진입 청년**에게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책임**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갖도록 **성년의 해**에 자기개발 및 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

□ 추진내용

○ 시행 전 사전 기반 마련 개요

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② 조례 근거 마련 ③ 영상 제작 등 적극 홍보
④ 신청대상(만19세)을 고려한 온라인 신청 체계 및 서류 미제출, 확인 검증 방법 마련

○ 추진 경과 및 내용

('20.12.) '21. 본예산 확보 ⇒ ('20.12.~'21.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21.4.28.) 보건복지부 조건부 협의완료** ⇒ ('20.12.~'21.6.)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21.3.15.) 지급 근거 신설**, **('21.5.18.) 거주요건 완화 개정 (3년 계속 거주 ▶ 1년 계속 거주)** ⇒ ('21.5. / '21.8.25.~9.30.) 전국 최초!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관련 대대적인 홍보(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안내문 우편발송**, 현수막, 자체보유 매체(SNS, IPTV, 전광판 등), 언론보도 등) ⇒ ('21.7.~8.)송파구 홈페이지 내에 신청·접수 웹페이지 구축 ⇒ ('21.8.25.) 신청공고 ⇒ **('21.9.) 신청 및 접수** ⇒ **('21.9.16. / 10.27.) 지급** ⇒ ('21.10.~12.) 미신청자 접수 및 지급, 사후관리 등 ⇒ (2022.1.24.) 2022. 가정의 달 5월 지급을 위한 공직선거법 선관위 검토 질의 ⇒ (2022.2.7.) 송파선거관리위원회 지급 가능으로 회답

○ **2021. 추진실적**: 4,338명 / 867,600천원 (전체 4,682명 대비 지급률 93%)

□ 추진성과 ※ 2021.서울을 이끄는 송파 정책상 장려상 수상(2021.12.28.)

○ **전국최초 사업으로 구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한겨레 등 15개사 언론보도)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권리, 책임을 생각하는 계기 제공

○ 출발하는 청년에 집중한 송파구만의 청년정책으로 의미가 큼

○ 청년정책의 타깃층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사업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선례 제공

(성동구, 광진구, 경기도 용인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치마킹해감 / 성동구 2022. 3. 시행)

제목: 송파구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추진목적

○ 입찰 정보 및 교육 제공으로 입찰 업무역량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 입찰 참여율과 낙찰 성공률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 지원대상: 관내에 사무소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관내 기업의 사업분야에 맞는 전국의 입찰 정보 무상 제공
- 실시간 제공되는 맞춤 입찰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
- 자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투찰금액 산출, 사정률, 예가, 발주처 입찰 내역 등을 분석하여 제공
- 입찰 스케줄 관리 및 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를 통한 입찰 관련교육 무상실시

○ 운영방법: 송파구 맞춤형 입찰정보 홈페이지 운영

○ 소요예산: 24,000천원(기금)

□ 추진성과

○ 맞춤형 입찰정보 전용 홈페이지 구축(2020)

○ 전자입찰 실무교육 추진(연 2회)

○ 운영실적

구 분	가입기업	정보제공	낙찰실적
2020년	347개사	240,843건	182건, 71,324백만원
2021년	353개사	415,951건	349건, 142,401백만원

제목: 허약노인 돌봄과 신중년 사회공헌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50+ 말벗활동단 운영

□ 추진목적

○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활용방안 마련

- 신중년의 퇴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경력과 전문성 방치)을 방지
- 돌봄과 나눔을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지역사회 허약노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 및 정서적 안정을 통한 회복 지원

□ 추진내용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 사업기간: 2021.1.~12.(활동기간: 2021.4.~12.)

○ 사업내용: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허약노인과 퇴직 신중년을 연결하여 허약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회복 지원

○ 참여인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등 퇴직 신중년 50명

○ 소요예산: 149,527천원(국비 129,624, 구비 19,903)

□ 추진성과

○ 장기 요양보험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인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허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 퇴직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운영으로 사회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중년 개개인에게는 소득과 보람 창출 기회 제공.

※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면 돌봄활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케어의 범위를 확대(신체→정신적 건강)한 점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음.

Ⅵ 조치사항

1. 행정상 조치 - 총 △건

시 정	△건
주 의	△건
현지조치	△건

2. 재정상 조치 - 총 △건, 금△천원

환 수	△건 금△천원

-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 건 천원
- 초과근무수당(정액분 등) 과다 지급 : 건 천원
- 출장여비 과다 지급 : 건 천원
- 공가 사용 부적정 : 건 천원
-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부적정 : 건 천원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비 지급 부적정 : 건 천원

충당·반납	△건 금△천원

-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 : 건 원
-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복 지급 : 건 천원

3. 신분상 조치 - △명

주 의	△명